

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

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을

장기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.



신청대상

고용보험 피보험자(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)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(석·박사 과정 포함)

- ①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
- ②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- 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 학교

대출한도

해당 학기 학자금(입학금,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)전액

- ※단, 사업주·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
- ※해당 학기 학자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학자금 총액으로 신청
- ※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총 한도액 2천만원(개인 신용대출한도는 농협은행으로 확인)

계절학기 학자금 (2013년 하계 계절학기에 한함)

대출조건

거치기간 연 1%, 상환기간 연 3%

상환기간

졸업 후 2년 거치,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

- ※대학원(석·박사)은 2년제와 동일하게 처리 → 거치기간 : 졸업 예정년도+2년, 단, 대학원 5학기는 무조건 2년
- ※정규학제 상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고정됨(기간 변경 불가)
- ※조기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

보증방법

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또는 개인 신용대출(농협)

신청기간

구 분		1학기 (2013. 1. 2 ~ 2013. 4. 30)							
접수일		1.2 ~ 1.15	1.16 ~ 1.31	2.1 ~ 2.15	2.16 ~ 2.28	3.1 ~ 3.15	3.16 ~ 3.31	4.1 ~ 4.15	4.16 ~ 4.30
대학원		1.22	2.7	2.22	3.8	3.22	4.5	4.22	5.7
대 학		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							
구 분		2학기(2013. 7. 1 ~ 2013. 10. 31)							
접수일		7.1 ~ 7.15	7.16 ~ 7.31	8.1 ~ 8.15	8.16 ~ 8.31	9.1 ~ 9.15	9.16 ~ 9.30	10.1 ~ 10.15	10.16 ~ 10.31
대학원		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							
대 학									

※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(2012.12.24.)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 지난 자가 대상입니다.

신청서 접수

희망드림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에 로그인 후 “생활안정자금지원 - 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”에서 신청 (공인인증서 필요)